

사업계획(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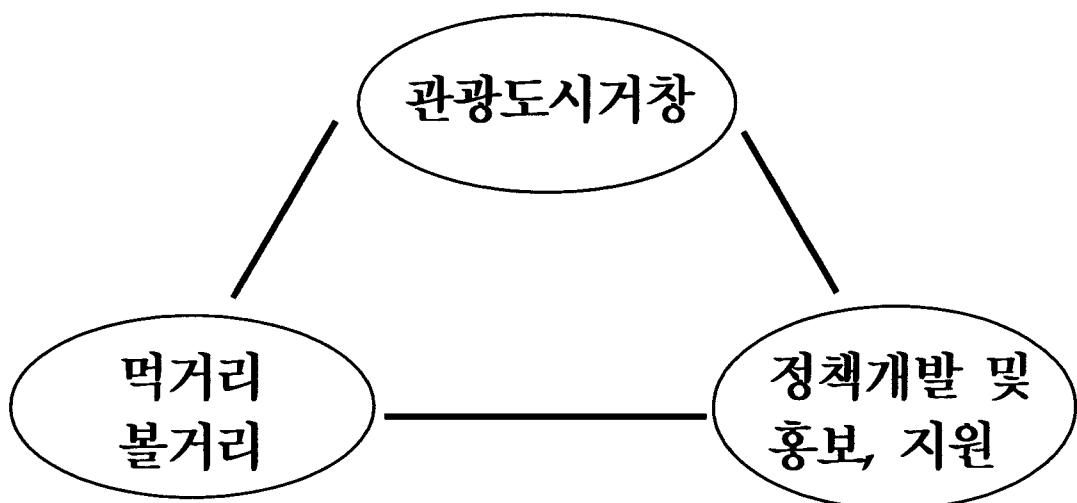
“관광발전연구회”

(가칭)거창관광발전의정연구회

1. 설립 목적

1. 거창군의회 관광발전연구회는 우리 고장의 관광자원을 활성화시켜 지역 발전에 이바지한다.
1. 기존 관광자원들의 활성화 방안은 물론 숨어있는 자원들을 발굴하여 상품화한다.
1. 각 지역의 특산품이나 향토식품을 개발, 발굴하고 전통을 지켜 그 지역의 먹거리 문화를 정착시킴과 동시에 그 지역의 볼거리를 찾아 아름다운 내고장을 알려 지역경제와 관광개발에 힘쓴다.
1. 침체되어 있는 거창 관광의 문제점을 찾아 경남 서북부 내륙지역의 관광 거점도시로 발전시켜 살기 좋고 풍요로운 거창을 만들어 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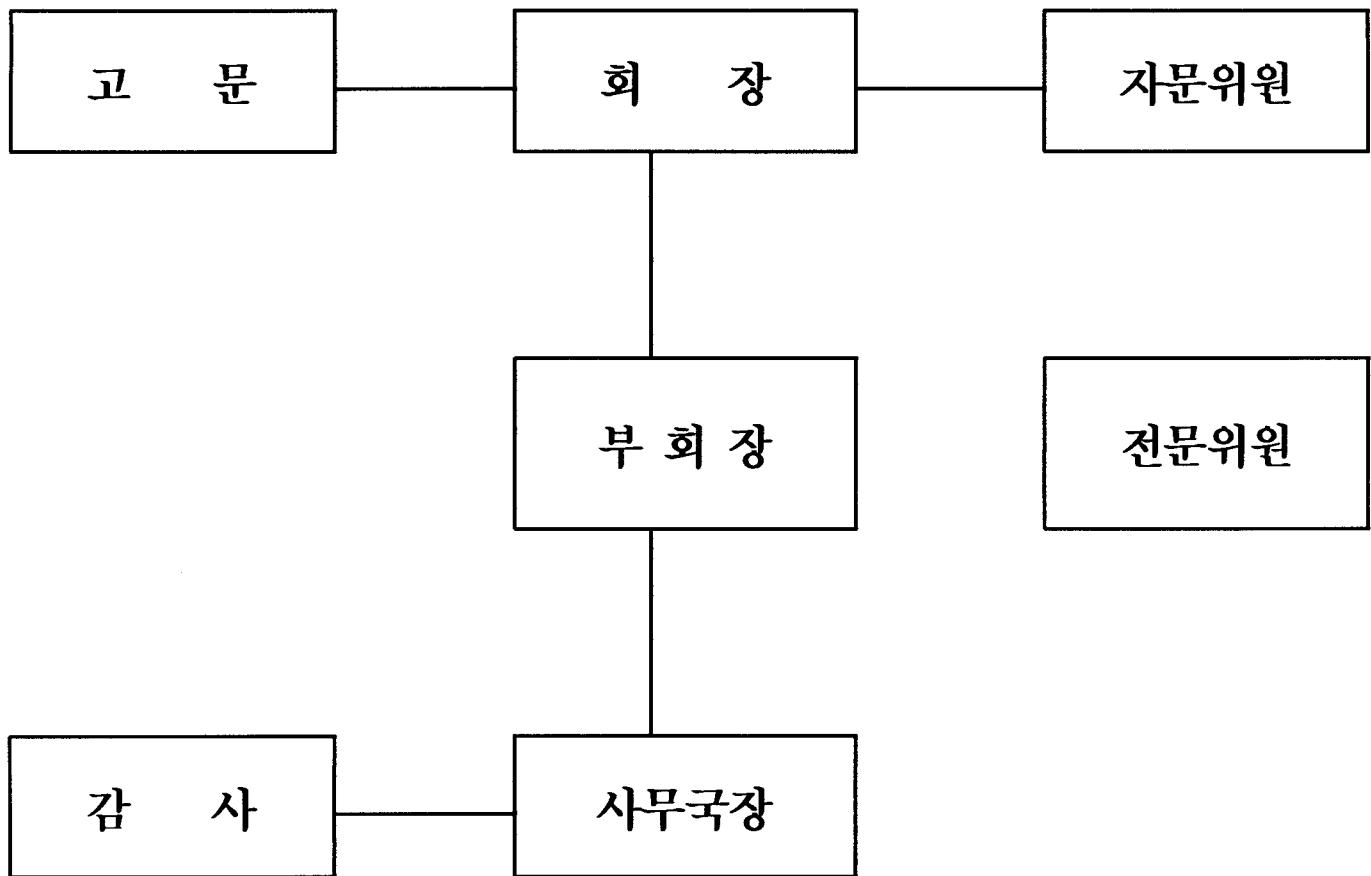
2. 연구회 이념체계



-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침체되어 있는 거창관광의 문제점들을 파헤쳐 정책 개발 및 대안을 제시하여 관광도시로서의 발돋움을 꾀하며 아울러 연구활동을 통하여 즐거운 의정활동을 하며, 살기 좋고 풍요로운 거창을 만드는 것을 궁극적인 이념으로 한다.

3. 조직

조직표



4. 업무

1. 고문, 자문위원 회장단

- 기획 및 프로그램 개발
- 재정확보
-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
- 언론의 창구역할
- 각종단체 상담 및 홍보업무
- 대외 유관기관 및 지역주민과의 유대관계
- 회원모집

2. 감사

- 효율적인 재정운영 감시 감독

3. 사무총장

- 사업계획 및 회지발행
- 대외 홍보에 관한 전반적인 기획 및 책임
- 운영의 실무책임 및 재정관리

5. 사업 계획(안)

1. 각 지역의 먹거리와 볼거리(관광자원) 현황을 파악한 후, 먹거리, 볼거리에 대한 관심을 고취하기 위해 관련기관 및 업체의 동참을 유도하고 홍보 계몽함으로써 거창의 먹거리, 볼거리 등 관광문화를 형성함을 최우선 사업으로 추진한다.
1. 학계나 업계 등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정책 개발과 홍보 등 대안을 제시한다.
1. 전통적인 먹거리와 볼거리를 계승발전 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먹거리, 볼거리를 개발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선도적 역할을 수행한다.
1. 관련단체 및 관련연구기관을 시찰한다.
1. 기타 세부사업계획은 총회에서 수립한다.

6. 홍보사업

1. 올바른 관광도시 실현을 위한 세미나 및 간담회

■ 세미나 및 간담회 개최 : 분기별

■ 예상 주제

- 올바른 먹거리 정보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 ?
- 각 지역별 볼거리 어떻게 만들 것인가 ?
- 먹거리와 볼거리가 인격 형성에 미치는 영향
- 농축산물과 관광과의 관계
- 주5일 근무제와 거창관광 등

7. 개발사업

1. 새로운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그 지역의 관광 및 특산품으로 육성, 정착 시켜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개발·지원한다.
2. 농어민의 고유한 전통가공식품(향토음식)을 개발육성(먹거리를 중심으로 우리의 전통식 문화와 접목한다)
3. 생산자가 확실한 장인정신의 가공식품, 공산품, 민예품, 관광상품 등 부가 가치가 높은 토산품을 선정, 장려하고 판매를 도와준다.
4. 요식업체의 실태를 파악하여 먹거리에 대한 확실한 정보를 제공하고 돈독한 관계를 개선한다.
5. 자연생태계 유지관련 자연학습을 위한 관광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한다.
6. 지역 문화재 등 숨은 자원을 개발하여 관광벨트화 한다.

거창군 관광발전의정연구회 회칙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회는 거창군 관광발전연구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연구회는 우리 고장을 사랑하고 올바른 먹거리 · 볼거리 문화를 창달하고 내고장 관광 벨트권을 하나로 묶어 코스화하며 회원상호간 친목도모 및 군민 행복추구 등의 지방자치 발전적 정착을 위해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사 업

제3조(사업의 종류) 본 회의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세미나 및 간담회 개최
2. 회지 및 소식지 발간
3. 지역특산품 및 관광상품 홍보 등의 개발사업
4.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위한 행사
5. 기타 본회 목적에 필요한 수익사업

제 3 장 회 원

제4조 (회원의 구성)

1. 본 연구회의 회원은 거창군 제4대 의회 의원으로 구성한다.
(회원가입)
2. 본 회 회원가입은 회원의 추천으로 만장일치로 의결한다.

제5조(회원의 권리의무) 본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각종 행사의 사업에 참여하며 소정의 회비를 부담할 의무를 가진다.

제6조(재정) 연회비 30만원과 기타 찬조금 및 지원금으로 충당한다.

제7조(징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이를 징계할 수 있다.

1. 본 회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한 회원
1. 본회의 회칙 및 규정사항을 이행치 아니한 회원

제 4 장 임 원

제8조(임원의 종류)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 1) 고문 (약간명)
- 2) 회장 1인
- 3) 부회장 1인
- 4) 감사 1인
- 5) 사무국장 1인

제9조(전문위원) 본회의 원활한 연구활동을 위해 사회각층의 직능별로 약간명의 전문위원을 둔다.

제10조(임원의 임기) 본 회의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보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와 동일하게 한다. 각 임원은 중임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 5 장 회 의

제11조(구분)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12조(소집) 정기총회는 매년 10월중에 회장이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회원 2/3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장은 회의를 소집한다. 단 월례회는 월 1회로 한다.

제13조(통지) 총회를 개최코자 할 때는 회의의 목적 등을 기재한 회의소집 안내서로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성원 및 의결) 총회와 월례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6 장 보 칙

제15조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통상 관례에 준하여 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부 칙

본회칙은 2004. 7. 일부터 시행한다.